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근거 신설>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21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근거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3.

3. 회부연월일 : 2025.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톨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업(2024년 추산 13,033개)의 0.3%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

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근거 신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을 보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¹⁾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 시행령²⁾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³⁾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비 부담 없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근거를 함께 규정하여 민간기관이 수탁을 기피하거나 위탁업무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⁵⁾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⁶⁾에서는 행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730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⁷⁾와 비용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⁸⁾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므로 경비 지원에 관한 의무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 없는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 안정화를 위하여 업무지원인 제도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참고 입법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8) <참고 입법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 지원 서비스의 입법례⁹⁾를 고려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